

전략연구 2017-16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

유학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hyyou@cni.re.kr

김정하

충남연구원 연구원

stree84@cni.re.kr

연구 요약

농촌지역에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경관자원 등 다양하고 소중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훌륭한 농촌자원들이 ‘개발위주’의 농촌개발정책 기조에 의해 제대로 보전, 계승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자원들은 농촌지역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농촌지역이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촌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재해석하고 후세에게도 계승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 동안 충청남도 농정 핵심은 1차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농촌개발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충청남도 농정의 방향을 고유의 농촌자원 발굴과 보전, 농업 생물다양성 보호,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보전 등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농촌농업자원을 후세에게 제대로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그 방안으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

□ 지역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

첫째, 지역농업유산에서의 지역이라는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한다. 둘째,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 정하고 있는 핵심 요소인 ‘전통적 농업지식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다. 셋째,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설정한다. 넷째, ‘농촌유산’의 개념을 일부 확대 적용한다. 다섯째, 농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무형적 요소도 포함한다.

□ 지역농업유산의 정의와 기본 조건

지역농업유산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의 독특한 풍토와 지역주민의 지혜가 담긴 농업활동, 농업자원, 농촌자원 가운데 다음 세대에 계승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다. 단 그 지역의 농업생산 활동과의 관계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농업유산으로서 갖추어야 할 4가지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고유한 향토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농업유산은 그 지역의 풍토, 기후, 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개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에 의해 전승되어 온 전통성이 있어야 한다. 오랜 기간 농업활동, 농촌생활을 통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전해내려 온 것이어야 한다.

셋째, 지역 고유의 농업생산활동이 있어야 한다. 지역농업유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농업과의 관련성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농업생산활동이 주가 아니더라도 농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농촌생활 요소도 농업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다음 세대에도 계승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지정된 농업유산이 현재의 상태가 변함없이 후세에게 계승할 수 있는 보전, 계승 시스템이 필요하다.

□ 지역농업유산의 유형과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역농업유산을 크게 ‘농업생산형 유산’ 과 ‘농촌생활형 유산’ 으로 분류하였다. ‘농업생산형 유산’ 은 농업 생산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토지자원, 시설자원, 농법자원, 유전자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농촌생활형 유산’ 은 농업 생산활동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으로 마을 문화자원, 공동체자원, 마을전통자원으로 세분하였다.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기준

지역농업유산 지정 기준에 있어 필수 조건은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서 계승되어 온 전통적 농업활동 또는 농업활동과 연관된 농업문화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생산형 유산’ 은 50년 이상 전승되어 온 해당지역의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적 농업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관이나 농작물의 고유 품종 보유 등 유전자 다양성과 종의 다양성 등 농업생물다양성도 중요한 기준 요소가 된다. ‘농촌생활형 유산’ 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전통적인 농업활동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며, 전통 농촌생활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농촌경관, 농촌문화 등이 기준 요소가 된다.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을 위한 제언

무엇보다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은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가칭)’ 조례를 제정이다. 또한 최근 충청남도가 주력하고 있는 농업환경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은 충남도(행정)만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없기에, 도민의 농업유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하며 시군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도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정책 활용(기대 효과)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5
4.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관련 개념 검토	9
1. 기존 농업유산의 개념	9
2. 농업유산과 유사한 개념	12
1) 농업유산과 UNESCO 유산과의 비교	12
2) 농업유산과 농촌유산의 비교	15
3. 지역농업유산의 개념	18
1) 지역농업유산 개념 설정의 기본 방향	18
2) 지역농업유산의 기본 조건	19
3) 지역농업유산의 정의와 구성요소	19
4. 지역농업유산과 기존 농업유산 개념과의 비교	21
제3장 관련 정책사례 검토	23
1.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23

1) 지정 절차	23
2) 지정 기준	24
2.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25
1)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도입	25
2) 국가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회 구성	27
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절차	27
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28
3. 문화재보호법	30
1) 개념과 대상	30
2) 지정 주체	31

제4장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추진안 33

1. 지역농업유산 정책도입의 필요성	33
2.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대상	34
3.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36
1)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기준	36
2) 지역농업유산 지정 절차	38
3)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39
4.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체계	40
1)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개요	40
2)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	41
3)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추진 방법	43
5.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보전, 관리 조례안	44

제5장 충청남도 농업유산 후보자원 사례 50

1. 서천 한산모시농업	51
2. 공주 정안밤농업	53
3. 당진 합덕제	54

4. 공주 선학리 지계놀이	55
5. 금산 송계와 송계지계놀이	56
6. 서천군 길쌈노래(저산팔읍길쌈놀이)	58
7.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59
8. 기타	60

제6장 결론 **61**

1. 연구 요약과 한계	61
2. 정책 제언	62

부록 **66**

1.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신청서 양식(안)	68
2. 제주도 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69
3.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정(안)	73
4.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83

표 목 차

<표 1-1> OECD의 신농촌 패러다임 변화	1
<표 1-2> 연구방법	4
<표 2-1> 농업유산의 구성 요소	11
<표 2-2> 농업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 문화적경관의 비교	15
<표 2-3> 유럽의 농촌유산 구성 요소	16
<표 2-4> 농업유산과 농촌유산 비교	17
<표 2-5> 지역농업유산의 구성 요소	20
<표 2-6> 기존의 농업유산과 지역농업유산의 개념 비교	22
<표 3-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의 변화	24
<표 3-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2012)	29
<표 3-3> 문화재 성격과 지정주체에 의한 분류	31
<표 4-1> 농촌자원의 분류	34
<표 4-2> 지역농업유산의 대상 분류	35
<표 4-3>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안)	36
<표 4-4> 각종 농업유산 지정 기준 비교	37
<표 4-5>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안)	42
<표 5-1>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 기초 분석	50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그림 1-2> 연구흐름도	6
<그림 2-1> 농업유산시스템의 유기적 관계 사례	10
<그림 2-2> 농업유산별 지정 범위	21
<그림 3-1>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 CI	26
<그림 3-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절차	28
<그림 5-1> 금산군 송계지계놀이 모습	58
<그림 5-2> 금산물폐기농요	60
<그림 5-3> 금산농바우끄시기	60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1) 농촌지역 개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그 동안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기초를 보면 보전측면 보다는 개발 위주의 ‘개발 지향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농촌발전을 위해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보전하기 보다는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농촌개발을 추진해 왔다(윤원근 외 2016).” 하지만, 최근 농촌개발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OECD의 ‘신농촌 패러다임’에서도 농촌농업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농촌지역 자산의 가치화, 미(未)이용 자원의 발굴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표 1-1〉 OECD의 신농촌 패러다임 변화

구분	기존 접근 방식	새로운 접근 방식
목적	농가소득 제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지역개발	농촌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산의 가치화 미(未)이용 자원 발굴
핵심 지향부문	농업 농촌개발	농촌경제의 다양화 (농촌관광, 그린케어, ICT산업 등)
핵심 주체	중앙정부 농업인	다층위 정부(국가, 광역, 기초) 지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 (공공, 민간, NGO 등)

출처: 최수명(2016), 미래형 농어촌지역발전 정책포럼 자료집

(2) 전통 농촌농업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농촌지역에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예부터 전승되어 온 소중한 자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 동안은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전통 농촌농업자원을 활용만이 아닌 후세에게 제대로 전승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 도시민들의 농촌농업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되며, 더불어 체계적으로 보전,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3) 충청남도 농정 방향의 전환 필요

지금까지 충청남도 농정 핵심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농촌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농촌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농정의 방향을 고유의 농업 자원 발굴과 보전, 농업 생물다양성 보호,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보전 등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다운 농촌모습을 간직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4) 국가농업유산과 세계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 대응 필요

최근 들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농업유산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2017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중요농업유산 2곳¹⁾, 국가중요농업유산 9곳²⁾, 국가중요어업유산 4곳³⁾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금산인삼농업이 2015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유일하다. 충청남도에 잠재되어 있는 농업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지정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1) 2017년 8월 현재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발담 2곳이 지정됨. 2곳 모두 2014년 4월에 지정되었다.
2) 2013년 1월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1호)과 제주 발담(2호)이 지정되었으며, 그 후 전남 구례군 산수유 농업(3호), 전남 담양군 대나무밭(4호), 충남 금산군 인삼농업(5호), 전남 하동군 야생녹차밭(6호), 경북 울진군 금강송 산지농업(7호), 전북 부안 유유동 전통양잠농업(8호), 울릉도 화산섬 발농업(9호)이 지정됨
3) 2015년 12월 제주해녀(1호), 전남 보성군 뽕배어업(2호), 경남 남해군 죽방렴(3호)이 지정되었으며, 2016년 10월 전남 신안군 갯벌 천일염업(4호)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4곳이 지정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충남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소중한 농촌농업자원을 후세에게 제대로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⁴⁾.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충청남도 농업유산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 한다. 둘째,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 한다. 셋째, 충청남도 농업유산 후보자원을 제시 한다.

3) 정책 활용(기대 효과)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지역의 농촌, 농업자원을 발굴, 보전,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이다. 다시 말해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 논리적 근거와 정책 추진 기본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충청남도가 본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발굴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들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른다면 국가중요농업유산 더 나아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4)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유산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방유산 지정제 도입’ 제도를 검토하였으나, 실제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⁵⁾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2019년을 정책 도입 목표년도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모든 시군이 포함된다.

내용적 범위는 각종 유산과 농업유산의 개념 정리, 농업유산 관련 정책 사례 분석, 충청남도 지역 농업유산 정책 추진(안) 제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 제시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① 국내외 관련 문헌 조사, ② 전문가 자문, ③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표 1-2〉 연구방법

구분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표적집단면접법
목적	-국내외 농업유산 제도 관련 내용 파악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 발굴	-지역농업유산 개념과 범위 설정 지문 -지역농업유산 기준 설정 지문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 논의
방법	자료 취득과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2회):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충남문화재단 협조	표적집단면접 실시 : 전문가, 충남문화재단
기간	17년 1월~3월	1차: 17년 1월 2차: 17년 6월	17년 7월

5) 착수연심회 시 본연구의 범위를 어업유산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에 한정된 농업유산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은 개념적으로 볼 때 중복되거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함께 다루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유산의 구성요소, 대상, 후보자원 등은 서로 상이하여 별도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지역농업(어업) 유산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정책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것이기에, 추후 충청남도가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하나로 하여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어업유산에 대한 개념, 정의, 대상만 추가로 연구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농업(어업)유산 정책의 기본적 틀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선행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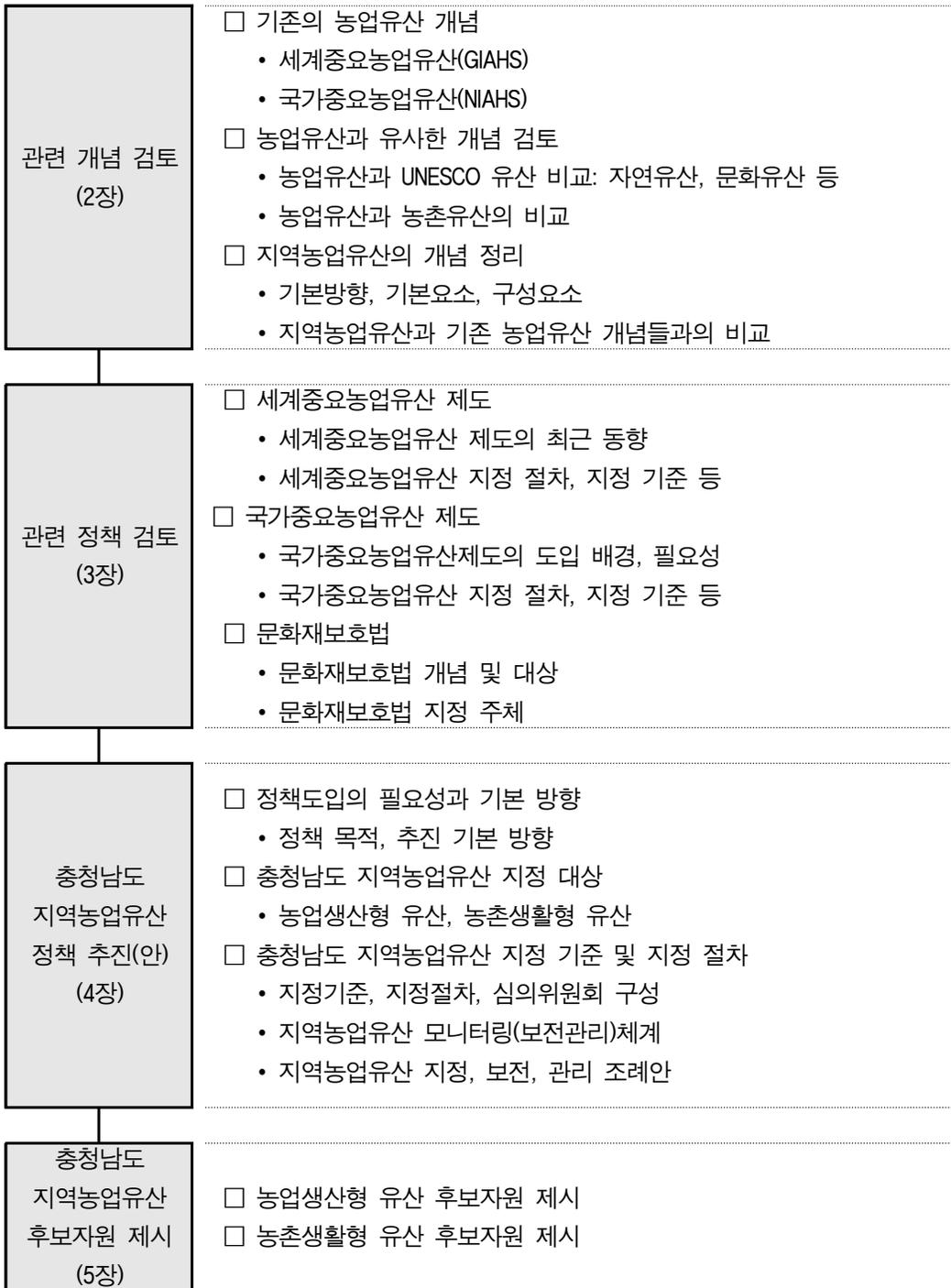
제2장 관련 개념 검토에서는 지역농업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유산과 관련된 개념을 정리, 분석한다. 농업유산 관련해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과 국가중요농업유산(NIAHS)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UNESCO에서 지정하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의 농촌유산 등 농촌유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 관련 정책 검토에서는 지역농업유산제도를 정책화하기 위한 기초 분석을 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되는 문화재 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준, 지정 후 보전 관리 등 지역농업유산 제도 도입을 위한 참고 자료를 충분히 취합하고 검토한다.

제4장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추진 방안에서는 우선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2장, 제3장에서 검토,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의 기본 틀을 구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농업유산 지정 대상 설정,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를 제시하는 등 지역농업유산을 정책화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제5장에서는 문헌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을 선정하고 각 후보자원별 기본적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정책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갖는 한계점과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밝힌다.



〈그림 1-2〉 연구흐름도(2장~5장)

4.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농업유산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 2012년 당시 '한국다량은 연구회⁶⁾'에서 농업유산이라는 제도 도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제의하였고, 2013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 추진하면서 농업유산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행정이나 학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가 짧은 탓에 농업유산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에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윤원근 외, 2012)에서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준 마련 및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체계적 관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 고시(告示)안과 근거법 제정 방안이 마련되었다.

'전라북도 농업유산 발굴 연구'(이민수 외, 2014)에서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가능성이 있는 자원을 발굴 제시하였고, 전라북도 농업유산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전라북도 농업유산지정제도 조례 초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농어업유산의 가치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백승석, 2015)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농어업유산 발굴과 지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하였고, 농어업유산 가치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 요소와 방법론에 대해 체계화 하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관한 연구'(주남희, 2016)에서는 농어업유산 보호를 위한 법령과 제도의 현황을 개관하며, 현행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道 단위의 농어업유산제도와 농어업유산 잠재지역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기법 개발 연구'(이정환 외, 2016)에서는 국가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단계별(준비단계, 지정단계, 운영단계) 모니터링 방법론을 개발 하였으며, 모니터링 체계도 정기모니터링, 기술모니터링, 통합모니터링 3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6) 한국다량은논연구회는 다량은논의 학술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밝히고자 설립된 비공식적 전문가 조직이며, 201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유산학회의 前身이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모형 적용을 위한 농업유산지역 공간자료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구진혁, 2017)에서는 농업유산 지역의 생태계 가치평가를 위한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고, 생태계서비스 모형을 적용하여 농업유산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 시스템으로 농업유산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평가를 모델링하여 농업유산지역의 발굴과 지정 및 보전활용계획 등에 활용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이상으로 살펴 본 결과 선행연구 대부분이 세계 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 도입과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보전 관리 방안 연구이다. 일부 연구에서 도(道) 단위의 농업유산 제도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와의 극명한 차이점은 연구 대상을 광역자치단체로 하였다는 점과 농업유산의 후보자원 발굴이 아닌 지역단위에서의 농업유산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산 후보자원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지역농업유산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역단위의 농업유산 지정기준, 범위, 절차, 관리시스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제2장 관련 개념 검토

1. 기존 농업유산의 개념

기존의 농업유산이라 함은 이미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 범위, 국가적 범위, 지역적⁷⁾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세계적 범위로서는 FAO(Foo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이 있다. 국가적 범위로서는 국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에 도입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가 있으며 외국의 경우 중국(2014년), 일본(2016년) 순으로 국가중요농업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범위로서는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전라남도 농업유산제도를 2015년에 도입하였다⁸⁾.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 전라남도의 농업유산 제도에서 제시한 농업유산의 개념은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의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농업유산 개념을 FAO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의 목적을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 기술과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농업유산을 발굴하여 보전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계적으로 귀중한 농업유산을 발굴, 보전하고 또한 농업유산을 통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킴으로서 인류의 삶과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상기의 GIAHS 목적 속에는 “농업유산시스템이 자연과 인간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점, 농업유산과 관련된 생물다양성⁹⁾과 문화 및 지식체계 등의 보전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7) 지역이라는 범주는 매우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세계, 국가단위보다 작은 지역을 의미하며, 편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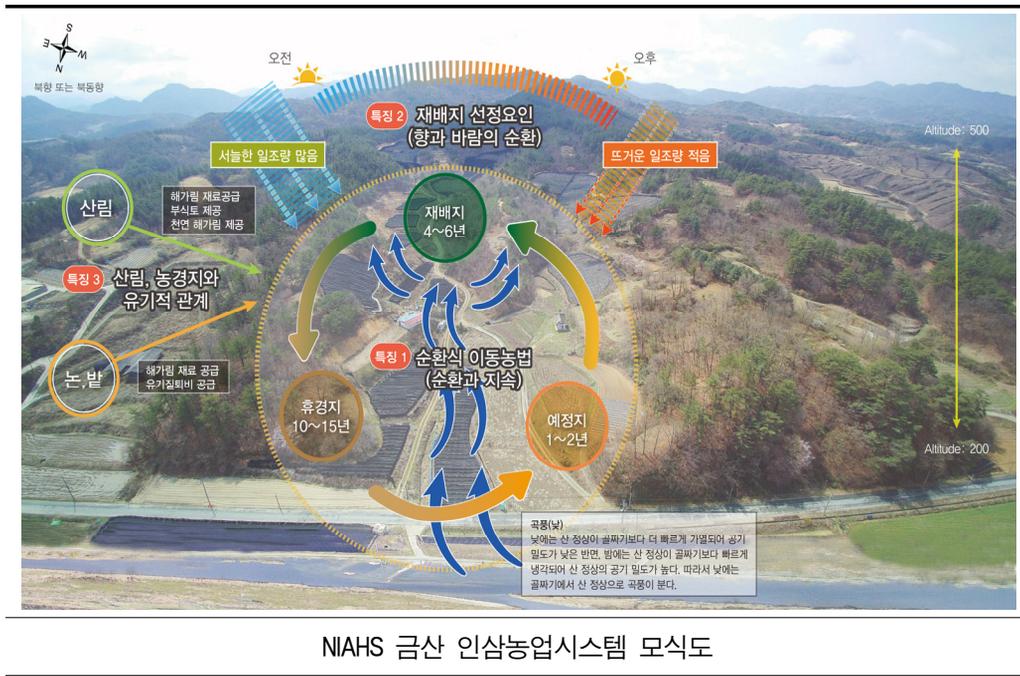
8) 2015년에 도입된 전라남도 농업유산제도는 현재 재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9) 2017년부터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을 기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기능유지’에서 ‘농업생물다양성

이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최식인, 2014).

FAO에서는 농업유산의 개념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환경과의 동반적응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와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 이 정의에서 보면 “농업유산이란 오랜 세월에 걸친 농업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적 토지이용시스템과 이것으로 형성된 경관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FAO에서 정의한 농업유산의 핵심 요소는 자연과 인간의 지속적 관계, 오랜 기간 축적된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농업활동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생태계와 농업생물다양성, 농업유산 지역의 주변 환경과 조화된 독특한 토지이용경관(농업경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농업유산시스템’이라 한다.



〈그림 2-1〉 농업유산시스템의 유기적 관계 사례

(Agro-biodiversity)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업생물다양성은 크게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 유전 다양성(Genetic diversity)으로 구분한다.

10) FAO 홈페이지 <http://www.fao.org/giahs> 참고하였다.

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지역)안에 하나의 농업유산시스템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으며 후세에도 보전, 계승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한편 2013년에 도입된 한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개념은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에 기초하여 정립되었다. 따라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과 대동소이하다.

한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란 ‘농림어업인이 지역사회 문화적, 농어업적, 생물학적 환경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 적응 과정을 통해 진화해 온 보전, 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 시스템과 이 결과로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과의 개념적 차이는 거의 없다.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하드웨어적 요소는 농경지, 농업 관련 시설물(농수로, 원예 시설 등) 등에 의해 형성되는 농업경관이다. 반면 소프트웨어적 요소는 전통 농업기술,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전통적 농업활동 지혜 등 농업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표 2-1〉 농업유산의 구성 요소

경관 및 시설물(하드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다랑이논, 경사지밭 등) ▪ 농업 생산 관련 시설물(농수로 등) ▪ 농업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물다양성 ▪ 토지,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체계 ▪ 전통 농업지식체계 및 지혜 ▪ 전통 농업 관련 축제, 풍습 등 문화체계

출처: 윤원근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목출판사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지역의 농업시스템과 농업경관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역주민에 의해 계승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역주민에 의해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¹¹⁾. 이 점이 뒤에서 설명하는 다른 문화유산, 문화재와 상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이런 의미로 보통 농업유산을 ‘살아있는 유산’이라 표현한다.

2. 농업유산과 유사한 개념

농업유산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UNESCO의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문화적 경관과 유럽의 농촌유산 등이 있다.

1) 농업유산과 UNESCO 유산과의 비교

(1)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유네스코의 정의에 의하면 '자연유산'이란, 첫째, 무기적(無機的)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로부터 형성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觀象)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둘째,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생물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자연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셋째,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 지역이나 자연 유적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전승할 만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의 기념물, 생물 종의 생식지(자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연유산과 FAO에서 정의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비교해 보면 생물다양성, 자연미 관점에서 유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윤원근 외 2016). 하지만 자연유산은 자연적 생성물이 과학적, 미적 관점에서 가치를 갖는 데 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전통농업에서 가치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2)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Wikipedia¹²⁾에 의하면 문화유산이란 사람들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의 자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키며 그 발전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존재해

12)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

왔고 또 후대에 계승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소산(所産)¹³⁾ 전부를 문화유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최식인 외 2014).

유네스코는 상기의 문화유산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로 세분화하여 문화 유산을 정의하였다. 기념물에는 건축물, 기념적인 의미를 갖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등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현저하게 세계적 가치를 갖는 유산이 포함된다. 건조물 군에는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로 그것이 건축성, 균질성, 입지성으로부터 역사적, 미술적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이 포함된다. 그리고 유적지에는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들이 포함된다.

문화유산과 농업유산이 자연유산과 다른 점은 문화유산, 농업유산은 인공의 소산이거나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이라면 자연유산은 자연의 소산이라는 점이다.

(3) 복합유산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유산을 복합유산이라고 한다. 세계유산¹⁴⁾ 가운데 복합유산은 하나의 공간(지역) 안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 조건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부합하는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에는 등재 조건이 총 10개 항목¹⁵⁾이 있는데, 이 가운데 1번~6번은 문화유산에 해당되고

13) 어떤 사건이나 물질적,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14) 여기서 말하는 세계유산은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말한다.

15)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2)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3)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4)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5)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6)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화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7)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8)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중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여야 한다. (9)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10)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최식인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목출판사, pp.38 인용

7번~10번은 자연유산에 해당된다. 10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세계유산이 되지만 복합 유산의 경우는 1번~6번 가운데 1가지 이상, 그리고 7번~10번 가운데 1가지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4) 문화적 경관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은 대부분 인류가 쌓아온 기념적인 건조물이 차지하고 있고 자연유산은 인간의 관리(간섭)에서 벗어난 자연지역이 대부분이다.

문화적 경관은 문화유산의 지정이 점(点)적인 보존에 치우쳤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면(面)적인 보존을 목적으로 도입된 개념이다¹⁶⁾. 이렇듯 문화적 경관은 자연에 대해 가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난 지역을 의미하며, 종래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사이를 메우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유네스코는 문화적 경관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정원 및 공원 등과 같이 인간의 설계 의도에 의해 창조된 경관으로 이를 '의장된 경관(designed landscape)'이라고 한다. 둘째, 현재까지 남아 있으면서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으로 여기에는 농림수산업 등의 산업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경관, 유적 등의 기념물과 일체가 되어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관이 포함된다. 셋째, 관련된 경관(associative landscape)으로 신앙, 종교, 문학 등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경관이 포함 된다¹⁷⁾.

문화적 경관의 두 번째 영역이 농업유산의 개념과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전통적 농업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업유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6) 최석인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목출판사, pp.39

17) 오민근(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계」, 국토논단. pp.98-99

〈표 2-2〉 농업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 문화적경관의 비교

구분	농업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	문화적경관
소산의 형태	인공소산 > 자연소산	자연소산	인공소산 > 자연소산	인공소산 + 자연소산
생물다양성 관점	중요	중요	불 포함	불 포함
미적(경관) 관점	중요 (인공미+자연미)	중요 (자연미)	중요 (인공미)	중요 (인공미)
보존/보전	보전	보존	보존	보존 + 보전
인간의 인위적 간섭	있음	없음	있음	있음
농업시스템 관점	중요	불포함	불포함	일부 포함
진행형/ 완료형	진행형 유산	완료형 유산	완료형 유산	진행형 유산

2) 농업유산과 농촌유산의 비교

(1) 유럽의 농촌유산

유럽농촌유산가이드(European rural heritage guide, 2003)에서는 농촌유산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농업활동과 연관된 구조물을 의미하는 제한적 의미로 정의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산의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 가이드에서는 농촌유산이란 “인간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면서 확립한 특정관계를 나타내는 유형적 요소는 물론 무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¹⁸⁾”. 또한 이 가이드에서는 무형적 요소는 유형적 요소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 최석인 외(2014), 『농어업유산의 이해』, 청목출판사, pp.46

〈표 2-3〉 유럽의 농촌유산 구성 요소

유형적 요소	무형적 요소
경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얻어진 경관 자산: 각종 생산활동을 위한 건축물 산출물: 식물 품종, 가축 품종, 가공품	경관, 건축물을 만드는 기능, 기술 그 지역의 방언, 음악, 구전 문학 관습, 이야기, 전설

유럽농촌유산 역시 경관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단순한 자연경치가 아닌 인간이 환경에 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소산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 문화적 경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업유산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농촌유산은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인공물, 유적지 등을 의미하지만, 농업유산은 농업과 관계성이 있는 경관만을 농업유산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즉 전통적 농업활동과의 관계성 유무가 농업유산인지 농촌유산, 문화유산인지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 잣대가 된다. 또한 농촌유산은 농업 생물다양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농업유산과 구별되는 점이다.

(2) 한국의 농촌유산

농어촌연구원의 연구¹⁹⁾에서는 한국의 농촌유산을 '농어촌 주민의 전통적 농림어업활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되어 온 지역사회의 차별적이고 독특한 유형·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였다. 이같이 정의된 "한국의 농촌유산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모든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농촌유산이란 사실상 가장 넓은 의미로 규정한 유산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²⁰⁾.

또한 윤원근외 연구에서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유산자원외에 농촌생활과 관련된 한옥마을, 마을 숲 역시 농촌유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점적, 선적 요소인 전통 담장, 우물, 성황당, 제당, 장승같은 고정자산과 종교용 제기나 농기구 같은 유동자산도 포함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환경과 전통에 적응된 결과로 얻어진 식물, 과일 등의 재래(토종) 종자, 고유 축산품종, 전통공예품 등이 포함된다. 결국 어느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걸쳐 계승되어 온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9) 농어촌연구원(2012) 「농어촌 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

20) 윤원근 외(2016), 『농어촌유산과 에코뮤지엄』 대원사. pp.14

이렇듯 농촌유산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활동은 물론 농촌생활과 관련된 모든 자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농업유산은 농촌생활과 관련된 요소를 제외하고 있다. 이것이 농촌유산과 농업유산과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표 2-4〉 농업유산과 농촌유산 비교

구분	농업유산	농촌유산
소산의 형태	인공소산 > 자연소산	인공소산, 자연소산 인공소산 + 자연소산
농업활동 요소	필수 포함	선택 포함
농촌생활 요소	일부 포함*	포함
유형요소/ 무형요소	유형** + 무형	유형 + 무형
경관 요소	농업경관	농촌경관+농업경관
생물다양성	필수 포함	불 포함
진행형/완료형	진행형 유산	진행형 유산 + 완료형 유산

* 농촌생활 요소 단독으로는 농업유산이 될 수 없음

** 무형요소도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농업활동과 관련 있는 유형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3. 지역농업유산의 개념

1) 지역농업유산 개념 정립의 기본 방향

지역농업유산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농업유산에서의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세계중요농업유산 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농업유산으로 지정 받지 못한 자원들을 발굴,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 정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유지한다. 기존 농업유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전통적 농업지식시스템’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농업지식시스템’이란 어느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전통농법, 농업기술, 농업인의 지혜가 하나의 지식체계로 형성된(시스템화) 것을 말한다. 지역농업유산에서도 전통적 농업 지식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지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한다.

셋째, 상기의 ‘전통적 농업지식시스템’이 오랜 시간 경과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생물다양성²¹⁾, 경관, 문화 등의 요소를 고려 하지만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세계, 국가 농업유산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에 있다.

넷째, 유럽과 한국에서 정의되어 온 농촌유산의 개념을 일부 확대 적용한다. 세계 또는 국가중요 농업유산시스템의 경우 전통적 농업활동을 매우 중시하며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농업유산시스템에서는 농촌유산처럼 농업활동이 주(主)가 되지 않아도 된다. 즉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농촌생활 요소도 중요시 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무형적 요소도 중요시 한다. 세계,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유형적 요소가 근간으로 무형적 요소가 핵심이 될 수 없지만, 지역농업유산에서는 농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다면 무형적 요소도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21) 농업유산의 유형에 따라서는 생물다양성이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룬다.

2) 지역농업유산의 기본 조건

지역농업유산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고유한 향토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농업유산은 그 지역의 풍토, 기후, 지형 등의 영향을 받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개성(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에 의해 전승되어 온 전통성이 있어야 한다. 오랜 기간 농업활동, 농촌생활을 통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전해내려 온 것이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적,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중도에 단절되었다가 복원(회복)된 것도 지역농업유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지역 고유의 농업생산활동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세계농업유산, 국가농업유산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농업유산은 다른 유산과의 차별성이 필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농업과의 관련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농업유산과는 달리 농업생산활동이 주(主)가 아니더라도 농업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농촌생활 요소도 농업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다음 세대에도 계승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지정된 농업유산이 현재의 상태가 변함없이 후세에게 계승할 수 있는 보전, 계승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요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지역농업유산의 정의와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지역농업유산을 상기의 5가지 기본조건들 간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지역농업유산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의 독특한 풍토와 지역주민의 지혜가 담긴 농업활동, 농업자원²²⁾, 농촌자원²³⁾ 가운데 다음 세대에 계승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다. 단 그 지역의 농업생산 활동과의 관계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농업유산의 목적은 오랜 기간 동안 전승해 온 역사, 문화, 풍토와 어우러지며 지역 생태계와도 조화를 이룬 건전한 농업활동과 그러한 농업활동과 연관된 농촌생활 모습들을 체계적인 발굴과 보전하면서 후세에 계승함에 있다.

22) 농업자원에는 토지자원, 농산물, 농업문화자원 등이 있음. 4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23) 농촌자원에는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사회자원 등이 있음. 4장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지역농업유산의 구성요소는 크게 유형요소와 무형요소로 구분한다. 유형요소에는 농업생산시설, 주민공동체시설, 농업(농촌)경관 등이 있으며 무형요소에는 전통농업과 관련된 전통농업시스템, 주민공동체 조직 활동, 문화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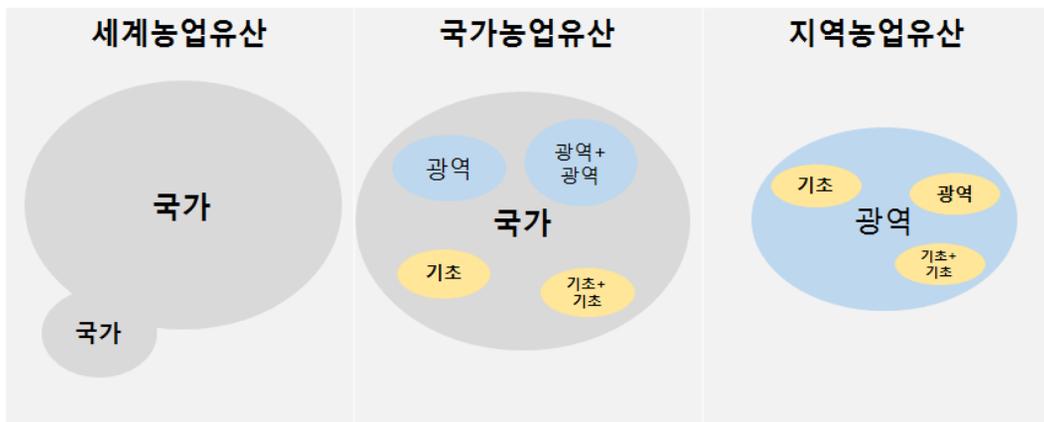
〈표 2-5〉 지역농업유산의 구성 요소

유형 요소	무형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시설 - 주민공동체 시설 - 농업(농촌)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지혜 및 기능 - 주민공동체 조직 활동 - 농업유산과 관련된 문화 활동

4 지역농업유산과 기존 농업유산 개념과의 비교

기존의 농업유산인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지역농업유산의 개념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지역 범위와 대상 범위라 할 수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농법이든 작물이든 세계적인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면, 국가중요농업은 어느 한 국가 내에서의 대표성을 강조한다. 반면 지역농업유산에서의 지역이라는 범위는 세계, 국가단위보다는 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그림 2-2〉 농업유산별 지정 범위

농업유산의 대상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과 관련된 유형유산을 핵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농업유산에서는 무형유산도 지역 농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농업유산 대상으로 포함한다.

지역 범위와 대상 범위 외에는 기본적으로 세계, 국가, 지역농업유산이 거의 유사하다.

〈표 2-6〉 기존의 농업유산과 지역농업유산의 개념 비교

구분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중요농업유산
유산의 대표성	세계적 대표성	국가적 대표성	지역적 대표성
지정 범위	국가 국가 + 국가	국가 광역단체 광역단체 + 광역단체 기초단체 기초단체 + 기초단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 기초단체 기초단체
핵심 요소 형태	유형	유형	유형 또는 무형
문화재와의 중복성	국가별 상이	중복되지 않음	중복 가능
농업시스템 관점	필수 요소	필수 요소	필수 요소
생물다양성 관점	필수 요소	필수 요소	선택 요소
미적(경관) 관점	필수 요소	필수 요소	선택 요소
보존/보전	보전	보전	보전

제3장 관련 정책사례 검토

1.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1) 지정 절차

그다지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절차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비해서는 복잡하지 않다. 2010년 이전 시범사업기간까지는 등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지만, 이 제도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에는 등재절차가 명확해지고 비교적 단기간에 등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등재 신청하는 농업유산이 늘어남에 따라 등재 기준이 엄격해지고 등재 절차도 보다 명확해 지고 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신청 절차는 해당국가의 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해당국가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또는 단체, 기관)이 직접 FAO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은 후 FAO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보통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은 후 FAO GIAHS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FAO에 제출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신청서 제출부터 지정 승인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해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가 완성되면 FAO GIAHS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에서는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자료(요약, 본문, Action plan, 부록)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지 확인한다.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기관)에게 통보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과학자문그룹(Scientific Advisory Group)'으로 넘어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 '과학자문그룹' 회의는 부정기적으로 열리나 최근에는 연 3~4회 개최하고 있다. '과학자문그룹'에서는 자문의원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현지 실사 여부, 신청서 보완, 탈락을 결정한다. 신청서에 대한 보완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현지 실사 단계로 넘어 간다. 현지 실사는 농업유산으로 신청한 지역에 자문위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현지 실사까지 통과되면 마지막 단계인 FAO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의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2) 지정 기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등재 기준이 2017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이전의 기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보편적인 생물다양성에 농업에 초점이 맞춰진 농업 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으로 바뀌어 보다 농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표 3-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의 변화

2017년 상반기 이전	2017년 상반기 이후
식량확보와 생계유지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좌동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 유지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	농업생물다양성 (Agro-biodiversity)
지식체계와 적응된 기술 (Knowledge system and adapted technologies)	지역 및 전통 지식시스템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
농업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 조직 (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좌동
경관, 토지 및 수자원 관리 특성 (Remarkable landscapes,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features)	경관 및 해양경관의 특징 (Landscapes and seascapes features)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식량 확보와 생계유지는 지역 공동체의 안전한 생활과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이러한 식량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나 소규모 농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전통적 농업과 이것을 통해 파생된 관련 산업이 지역주민의 생계에 주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농업생물다양성은 크게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생물 다양성은 동식물의 고유품종과 유전자원 등의 생물다양성을 가지며 농업의 경작과정에서 높은 수준

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이다.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 유전자원(고유종, 희귀종,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지역과 전통지식시스템은 농업기술, 농업지식, 생물다양성 보전 지식, 경관 보전 지식 등이 현재 까지 지역주민들에 의해 계승되어 온 유무형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전통지식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적 조직 및 관습의 유무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은 농업유산 지역 내에 전통적, 문화적, 정신적 사회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체계가 해당 지역의 농업유산시스템(전통농업시스템)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경관적 기준은 농업경관을 제공하는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효율화, 레크리에이션 가치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적 경관요소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²⁴⁾ 제도

1)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도입

(1) 농어업유산자원 지정관리 기준 제정 및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9월 18일 고시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 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년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후, 같은 해 12월 6일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이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285호) 되었다. 고시에는 농어업유산 지정 대상과 기준,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신청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농업유산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이 고시로 2012년에 공포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 보전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이때에 이르러 국가 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예산 확보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신규 예산 1,150백만 원이 2013년 1월 2일에 편성

24)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현재의 해양수산부와 분리되기 전이기에 국가농어업유산이라 명칭 하였으나,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국가중요어업유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편의상 국가농업유산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본문에 다루어지는 내용 또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제외하기로 한다.

되어 향후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지역에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으로 배분되었다. 이 예산은 농촌의 전통농법, 농촌경관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하고 발굴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은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3년간 15억 원이 지원(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관리와 평가를 맡고 있다. 향후 7년간 25개소에 총사업비 287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유산자원의 발굴과 복원을 위한 세부설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농업유산의 복원이나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농업유산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환경정비도 가능하며, 가치제고를 위하여 방문객들의 휴식과 관광에 필요한 친환경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중요농업유산 CI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중요농업유산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부각되고 일반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상징이미지를 마련하여 그 명예를 표상하고 국가유산의 홍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5월 2일에 국가 중요농업유산 심벌(Symbol), 로고(Logo), 시그니처(Signature)를 지정하였다. CI는 농업의 필수요소인 자연환경과 경작(쟁기질), 전통문화(농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의미와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Korea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그림 3-1〉 국가중요농업유산 기본 CI

2) 국가중요농업유산 심의위원회²⁵⁾ 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기준 제12조에 의거 농어업유산 후보 자원들을 평가하고 심의하기 위해 2012년 12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과 관계 공무원 3명 총 16명으로 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관련분야 전문가에는 전통문화 분야 4명, 경관 분야 2명, 생태환경 분야 3명, 지역개발 분야 2명, 관광 분야 2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심의위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장을 위촉하였다.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의 지정과 취소, 지정기준과 절차의 제정·변경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절차

(1) 신청서 신청 및 접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에 맞는 유산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하는 자(단체, 지자체 등)는 농업유산이 위치하는 지역²⁶⁾주민의 1/2이상이 서명한 동의서 또는 주민협의회²⁷⁾위원 2/3이상이 서명한 동의서와 농업유산 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관할 시/도에서 1차 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신청 받은 농업유산 자원에 대해 1차 서류검토와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에는 농업유산과 관련된 농업, 생태, 문화, 경관, 지역개발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직접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조사를 한다. 조사를 마친 후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자문위원회에 상정한다.

25) 2016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26) 행정리를 기준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행정리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리 또는 행정구역 전체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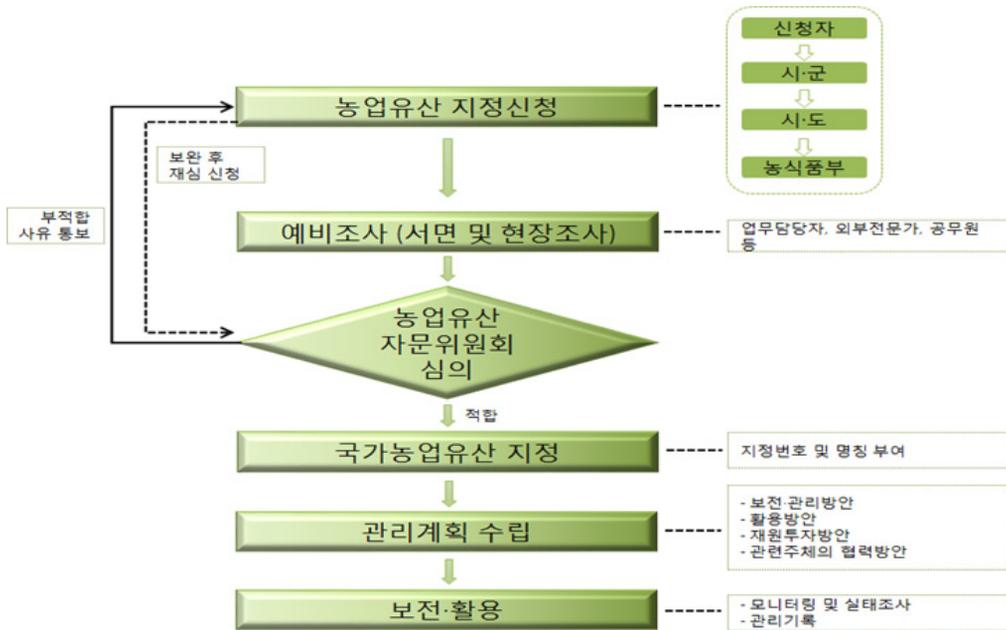
27) 농업유산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심의위원회 개최

국가중요농업유산 자문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농업유산 현장 조사 보고서와 신청서 등을 기초로 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4) 지정 및 공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한다.



〈그림 3-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절차

4)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은 유산 가치성, 파트너쉽, 효과성으로 구성되며, 유산 가치성은 역사성, 대표성, 유산 특성이라는 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역사성 항목은 100년 이상이란 명시적인 기준과 미래가치와 지속성을 포함한다.

둘째, 대표성 항목은 분야별, 지역별 대표성과 차별성의 유무를 지정 기준으로 설정한다.

셋째, 유산의 특성은 식량 확보, 생물다양성, 지식시스템, 문화, 경관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5가지 특성을 준용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해당 지역의 NPO 등과 같은 단체의 협력도와 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로 구성된다.

효과는 농업유산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브랜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높은 생물다양성 또는 특징적인 작물의 서식으로 구성하여, 농어촌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구성된다.

〈표 3-2〉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준

구분	항목	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 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 형성	•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3. 문화재보호법²⁸⁾

1) 개념 및 대상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한다.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사적)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명승)
-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의 대상은 농업유산의 대상 범위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농업유산의 핵심요소인 농업생산활동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농업유산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28) 문화재보호법 관련 내용은 충남문화재단 주남희 주임이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2) 지정 주체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그 지정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3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2조제2항).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국보·보물(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민속문화재)의 7종이 존재한다.

(2) 시도 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지방기념물 및 지방민속문화재의 4종이 존재한다.(예: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충청남도기념물, 충청남도민속문화재)

(3)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표 3-3〉 문화재 성격과 지정주체에 의한 분류

지정주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국가 지정	국보	보물	중요무형 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 문화재
시도 지정	지방 유형문화재		지방무형 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민속 문화재
	문화재자료						

그 밖에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은 그 중에서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지정행위에 의한 보호가 부적합하거나 지정행위에 의하여 보호할 정도의 높은 가치는 없으나 그것들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생성되어 문화의 발전을 이룩한 징표임을 고려할 때에 지금의 시점에서 인멸 또는 멸실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²⁹⁾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재관리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청은 일반적으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의 경우 과(課)단위에서, 시·군·구 단위의 경우 계(係)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지방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71조).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법정화하고 있다(동법 제30조제2항)

29) 김창규,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12쪽, 동방문화사

제4장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추진안

1. 정책도입의 필요성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주민은 물론 도시민에게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농촌자원, 농업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경지, 마을 숲, 마을 하천, 농촌 풍경 등이 얼마나 많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소중한 자원으로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농촌자원, 농업자원을 복원,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량이논, 토종 종자, 기우제 등 수 십년 전에는 어느 농촌마을이라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지금 복원하거나 계승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에서 영원히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자원이 될 것이다.

셋째, 농촌개발 추진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농촌개발 방식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여 얼마만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가 제일 우선시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 자원의 활용에 치우친 개발이 아닌 지역자원을 보전, 계승하는 개발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할 시키라 할 수 있다.

넷째,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후보 자원 발굴에서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된 '금산 인삼농업'이 유일한 농업유산이다.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발굴과 동시에 국가적 또는 세계적 대표성을 지닌 자원을 발굴,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받기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2.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대상

전술 하였듯이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농업유산은 세계중요농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되, 지정 대상은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촌생활, 농촌문화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³⁰⁾에서는 농촌자원을 크게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연자원은 다시 환경자원과 자연자원으로, 문화자원은 역사문화자원과 경관자원으로, 사회자원은 시설자원과 경제자원, 공동체자원으로 세분화 하였다(표 1-13 참고).

〈표 4-1〉 농촌자원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자원 예시
자연 자원	환경자원	• 공기, 물, 소음 없는 환경
	자연자원	• 토양, 지형, 동물, 수자원(하천, 저수지 등), 식생(보호수, 노거수, 마을숲 등), 습지, 생물서식지
문화 자원	역사문화자원	• 전통 건조물, 정자, 사당, 제각, 성황당, 돌무덤, 당나무, 전통 주택, 돌담, 흙담, 마을안내석, 솟대, 장승, 역사적 인물
	경관자원	• 농업경관: 다랑이논, 마을평야, 밭, 과수원 • 하천경관: 갈대, 하천의 흐름, 하천변 수림 • 산림경관: 산세, 배후 구릉지
사회 자원	시설자원	• 공동생활시설: 마을회관, 노인정,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등 •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공동주차장 • 농업시설: 창고, 공동작업장, 집하장, 관정, 농로, 농배수로
	경제자원	• 도농교류: 관광농업, 휴양단지, 민박 • 특산물: 유기작물, 수공업품, 도자기, 특용작물
	공동체 자원	• 생활공동체: 관혼상제 부조, 경로잔치, 친목계 • 농업공동체: 품앗이, 작목반, 판매유통 조직 • 마을문화: 공연, 축제, 전시회 • 마을놀이: 명절놀이, 생산놀이 • 마을관리: 마을청소, 마을홍보

자료: 농림부(2007)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표준 교재

30)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농촌진흥청 내에 소속되어 있음

또한 학자에 따라서는 농촌자원을 농업자원, 환경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자원은 토지, 농업생산과정, 농업생산물, 농업생산 관련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경생태자원은 식물자원, 동물자원, 지형자원으로 구분한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농림부, 2007)³¹⁾.

본 연구에서는 지역농업유산을 크게 '농업생산형 유산'과 '농촌생활형 유산'으로 분류 하고자 한다. 농업생산형 유산은 농업 생산과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토지자원, 시설자원, 농법자원, 유전자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농촌생활형 유산은 농업생산 활동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으로 마을문화자원, 공동체자원, 마을전통자원으로 세분한다. 즉 농촌생활형 유산이라도 반드시 농업생산 활동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다.

〈표 4-2〉 지역농업유산의 대상 분류

대분류	중분류	자원 예시
농업생산형 유산	토지자원	논, 밭, 과수원, 인공림, 저수지, 하천, 농수로, 둠벙 디랑이논, 경사지 과수원, 마을숲, 붓도랑, 시목지
	시설자원	농산물보관창고, 공동작업장, 관정, 공동퇴비장, 대장간
	농법자원	재배기술, 농산물 저장기술, 가공기술, 친환경농법
	유전자원	고유(재래)품종, 희귀 품종
농촌생활형 유산	마을문화자원	마을문화활동(공연, 잔치), 풍년기원제, 기우제
	공동체자원	품앗이, 두레, 전통적 조직
	마을전통자원	성황당, 보호수, 당나무, 정자목

지역농업유산의 대상 범위가 기존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다른 점은 농업유산의 대상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생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농촌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 공동체, 전통 요소도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품앗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 등은 그 자체만으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들도 지역농업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이미 국가지정 또는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³²⁾.

31) 농림부(2007)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표준 교재』, pp.62-97 참고 및 인용

32)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및 민속자료는 지역농업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1)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기준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기준은 기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에서 제시한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로 설정하고자 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세계적 대표성을 국가중요농업유산이 국가적 대표성을 갖고 있다면 지역농업유산의 기초 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적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된다.

단, 지정 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서 계승되어 오는 전통적 농업활동 또는 농업활동과 연관된 농업문화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생산형 유산의 경우는 농업 생물다양성, 농업 유전자 보존 등 지속가능한 농업도 필수 조건에 포함한다.

〈표 4-3〉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안)

구분	항목	세부 기준
농업생산형 유산	전통적 농업활동 전승(※필수)	- 50년 이상 전승해 온 전통 농업시스템(기술, 지식, 지혜)
	농업경관 형성	- 전통적 농업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관 - 토지경관, 작물경관, 농업생산시설 경관 등
	지속가능한 농업 (※필수)	- 농업 생물다양성 - 농업 유전자 보존 - 친환경농업(농법)
	관련 주체의 관심과 참여	- 자원 관리, 보전을 위한 농가, 지역주민의 참여 - 자원 관리, 보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
농촌생활형 유산	전통적 농업문화 보유(※필수)	- 전통 농업활동과 관련된 지역의 농업문화
	농촌경관 형성	- 전통적 농촌생활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관
	관련 단체(조직)	- 지역의 농업문화활동을 전승하고 있는 단체(조직)의 유무
	지자체의 관심	- 자원 관리, 보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시스템

농업생산형 유산은 50년³³⁾ 이상 전승되어 온 해당지역의 전통적 농업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적 농업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관이나 농작물의 고유 품종 보유 등 유전자 생물다양성과 종의 다양성 등 농업생물다양성은 선택적 기준 요소가 된다.

농촌생활형 유산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전통적인 농업활동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며, 전통 농촌 생활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농촌경관, 농촌문화의 유무가 선택적 기준 요소가 된다. 지역농업유산과 국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과 비교해 보면, 전통적 농업지식체계는 어느 유산이나 공통적으로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다. 단, 지역중요농업유산의 경우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항목을 제외하고는 생계 및 식량 확보, 농업 생물다양성, 전통 문화 및 조직, 경관 항목은 국가나 세계중요농업유산과는 달리 선택적 기준이다. 그 외 역사성, 지역주민 참여 항목은 지역, 국가, 세계중요농업유산 모두 필수 기준이다.

〈표 4-4〉 각종 농업유산 지정 기준 비교

구분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중요농업유산
생계 및 식량 확보	필수	필수	선택
농업생물다양성	필수 (매우 중요시)	필수	필수
전통적 농업지식체계	필수 (매우 중요시)	필수 (매우 중요시)	필수
전통 문화, 조직	필수	필수	선택
경관	필수	필수	선택
역사성	필수	필수 (100년 이상)	필수 (50년 이상)
대표성	세계적 대표성	국가적 대표성	지역적 대표성
지역주민 참여 ³⁴⁾	필수	필수	필수

33) 반드시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원의 유형,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4) 여기에서의 지역주민 참여는 작목반, 품목 연구회 활동 및 관련 농업 문화 보전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역농업유산 지정 절차

(1) 신청 단계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장 또는 해당 자원을 관리, 보전하고 있는 주민단체(조직)의 대표이다. 신청인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시기 및 기한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에서 결정하되 최소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2) 접수 단계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에 접수된 신청서는 1차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신청서 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신청서에 대해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심의위원회³⁵⁾(가칭)'에 심의를 요청한다. 문제가 있는 신청서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신청서 심의 단계(서면 심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1차적으로 서면 심의를 한다. 서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현장실사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한다. 심의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4) 현장 실사 단계

심의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 결과, 2차 현장실사가 필요한 자원(지역)을 선정하면 그 지역에 한해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현장 실사는 심의위원 가운데 5명이상으로 구성한다. 가능한 심의위원장은 반드시 참석한다.

(5) 승인 단계

심의위원회는 1차 서면 심사 및 2차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기준에 충족한 자원에 대해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승인해 준다. 한편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시군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5)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후술한다.

3)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1) 심의위원회 구성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호선된 위원장은 위원 중에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³⁶⁾.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으로는 충청남도 농정국장, 충청남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위촉직위원은 농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농정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회의 역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①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③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④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기준, 절차, 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심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3) 심의 절차

위원장은 심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안건을 일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충청남도 농업유산 모니터링 체계³⁷⁾

1)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개요

(1) 개념

모니터링은 원래 공학이나 생물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과학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라 함은 공학에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움직임을 관찰, 통제, 검증하는 활동을 지칭하며, 생태학에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식생의 변화, 수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의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³⁸⁾.

농업유산의 모니터링을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면 관리 주체가 지역농업유산의 보전상태, 운영실태, 또는 농업유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통하여 농업유산의 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운영의 주체에 대하여 경고, 충고,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⁹⁾. 즉 지역농업유산의 모니터링이란 앞에서 정의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체계적,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유산 대상 공간의 관리계획, 조직, 운영 상황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2) 모니터링 주체 및 범위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의 주체는 농업유산을 관리와 연계된 개념이므로 지역농업유산 관리주체가 모니터링 주체가 된다.

지역농업유산의 관리 주체는 충청남도, 기초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지역주민이므로 이러한 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지역농업유산의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모니터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에 대한 총괄적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또한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역농업유산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지시하며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한다. 해당 기초지자체는 모니터링

37) 농업유산 모니터링 체계는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에 별도의 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여기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다루기로 한다.

38) 산림청 홈페이지 참고(<http://www.forest.go.kr>)

3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2016),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기법 개발연구' p.39 참고 및 일부 내용 인용하였다.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보고한다.

지역농업유산의 모니터링에 있어 해당 지역의 주민,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유산은 다른 유산과는 달리 농업활동 또는 농촌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모니터링 참여 및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도 모니터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모니터링 필요한 생물다양성 관찰, 경관 요소 분석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듯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주체는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이며 이 들 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지역농업유산의 모니터링 범위는 기본적으로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공간적 범위로 한정하나, 모니터링 지표에 따라서는 농업유산 지정 공간을 벗어날 수도 있다.

2)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 계승, 활용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는 크게 운영체계, 보전, 활용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운영체계 부문에서는 관리 주체, 관리 체계, 관리 계획, 예산 관련 사항이 포함되고 보전 부문에서는 전통 농업 보전, 생태 환경 보전이 포함된다. 활용 부문에서는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로 세분할 수 있다.

〈표 4-5〉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지표(안)

구분		지표	모니터링 방법	
운영 체계	관리 주체	전담 공무원 배치 유무	농업유산을 지정, 관리 및 활용을 전담할 행정조직 또는 전담 인력 유무	정량
		주민협의체 활동	농업유산을 신청한 주민협의체의 활동 여부	정성
	관리 체계	제도적 장치	농업유산 보전, 관리, 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00 제정수	정량
		농업유산 모니터링 D/B	농업유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포함한 D/B 구축 여부, 축적 여부	정성
		모니터링 결과 환류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반영 실적	정성
	관리 계획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자체의 농업유산 보전, 관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정성
예산 확보	예산 확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지자체 예산 확보 여부	정성	
보전	전통 농업	관련 작목 데이터	농업유산과 관련된 작목의 재배면적, 재배농가, 생산량 파악	정량
	전통 생활	전통생활 양식 변화	농업유산과 관련된 전통생활양식의 변화상 파악	정성
	농업 생물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농업유산지역 비오톱 조사 여부	정성
		종 다양성	농업유산지역의 식물상, 동물상 D/B 구축	정성
		유전자 다양성	농업유산 관련 작물의 유전자 품종 보유	정성
	경관	농업경관	전통 농업과 관련된 농업유산의 경관 조사	정성
농촌경관		전통 생활과 관련된 농업유산의 경관 조사	정성	
활용	경제적 효과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	농업유산 관련 브랜드 개발 또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실시 여부	정성
		관광객 증가율	농업유산 지정 후 지자체의 관광객 증가율	정량
	사회적 효과	농업유산 해설사	농업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수	정량
		지역이미지 향상	언론매체, 홍보물 등의 홍보 활동 여부	정성

3) 지역농업유산 모니터링 추진 방법

모니터링 대상은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구역 내 동식물, 농업시설물, 농촌생활시설, 농업 경관, 농촌생활경관 등 유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지역도 포함한다.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연 2회(상, 하반기)실시하나,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의해 농업유산이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주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자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5.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보전, 관리 조례안⁴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충청남도 내 중요한 농업유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정, 관리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전통지식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의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을 포함 농촌지역주민이 해당 지역의 풍토, 환경, 풍습 등에 적응해 오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무형의 농업, 농촌자원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이란 상기의 농업유산 가운데 후세에게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농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업무 수행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

제4조(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동의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 변경, 취소 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민 동의서는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대상지역(행정리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40)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43호)을 참고하여 작성함

1/2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주민 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당 1인으로 산정한다).

2. 주민협의체 동의서는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이 2/3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

① 지역농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유산의 소유자와 유산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시장,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역농업유산의 지정번호 등)

①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번호는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단, 지정 일시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②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명칭은 지역명(시/군, 읍/면, 마을명 등)에 지역농업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사용하며,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남도 지사가 결정한다.

제3장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심의위원회

제7조(지역농업유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 농정국장
2. 충청남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상임위원
3.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농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위촉한다.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농정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①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③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 ④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기준, 절차, 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의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10조(수당과 여비)

- ① 충청남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한 심의위원회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청취)

- ① 위원장은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업무협조)

- ① 위원장은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자문과 관련하여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관리 및 활용

제13조(지역농업유산 관리주체)

- ①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는 지역농업유산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는 지역농업유산의 관리를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주민협의체가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을 관리할 경우 시장,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지역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유산의 복원 및 수리)

- ① 시장, 군수는 지역농업유산을 복원,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유산의 전통 구조,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을 것
 2. 유산은 일률적인 복원, 수리를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새로운 재료, 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
 4. 유산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할 것

제15조(유산의 활용 사업)

- ①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나 농촌의 활성화 또는 도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농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농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 멸실시키지 말 것
3. 지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것
4.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얻을 것

제16조(지역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 ① 충청남도지사는 지역농업유산의 현상 파악과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역농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지역농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

- ①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연 2회 이상 지역농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역농업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 여부
 2. 지역농업유산의 모니터링 실태
 3. 지역농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상, 환경 등 주변의 변화 상태
 4. 안내판, 경고판 등 각종 보호 및 홍보 시설물의 상태
 5. 기타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8조(조사결과 조치)

- ① 시장, 군수는 실태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농업유산의 원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
 2. 그 밖에 지역농업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 ② 시장, 군수는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그 현상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농업유산 관리의 기록)

- ① 시장, 군수는 농업유산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조사, 수리, 복원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서식(부록 참조)의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제20조(신청대상)

- ①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중에서 국가적으로 보전, 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지정신청)

- 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 절차 등 모든 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43호)을 따른다.

제5장 충청남도 농업유산 후보자원 사례⁴¹⁾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된 국가중요농업유산 신청서, 충청남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을 선정하였다.

〈표 5-1〉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 기초 분석

명칭	소재지 (시군)	전통적 농업 활동	전통적 농업 문화	농업 농촌 경관	지속 가능성	계승 실태
한산모시농업	서천	○	○	△	○	○
정안밭농업	공주	△	△	△	○	△
청양구기자, 맥문동농업	청양	△		△	△	△
서산생강농업	서산	△			△	△
당진 합덕제	당진	△	△	△	○	△
청양 다랑이논	청양		△	○	△	△
송계지계놀이	금산	△	○	△	△	○
청양 구기자주	청양		△		○	△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태안		△	○	○	○
공주 선학리 지계놀이	공주	△	○	△	△	
금산 농바우꼬시기	금산	△	○	△	△	○
금산 물떼기농요	금산	△	○	△	△	○
홍성 결성농요	홍성	△	○	△	△	○
서천저산밭을길쌈놀이	서산	△	○	△	△	○
홍성 문당마을 오리농법	홍성	△	△	△	○	○
예산 황새마을	예산	△	△	○	△	△

주) ○: 충족 △: 보통

41) 여기서는 농업유산 후보자원에 대해 개략적 내용만 다루고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차적으로 선정된 후보자원에 대해서는 전술에 제시한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분석⁴²⁾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자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서천 한산모시농업⁴³⁾

(1) 모시의 역사

모시의 원산지는 동아시아이다. 옛날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지에서 야생 모시가 있었고, 또 재배한 사실도 있었다고 하나 명확한 기록은 없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모시를 재배하였고 1900년대 초기에는 연간 10만톤 정도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재배해 왔으며 충청도 사람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모시뿌리를 가져다가 충남에 재배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려 5대 경종시대에 전북 정읍에서 처음 모시를 재배하였고 그 당시 중국조정에 세종으로 바친 고려 모시포는 품질이 우수하여 널리 알려졌으며, 서천 한산모시의 유래는 삼국시대 백제후기에 한산 건지산(乾芝山)에 자생하던 모시를 옷감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500년 전통을 이어온 한산모시는 통일신라시대 경문왕 869년에 모시를 중국에 공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 원나라는 모시를 공물로 요구하였으며 조선시대 인문역사지 '택리지'에는 모시 중에서 한산 세모시가 제일이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한산모시의 품질은 예부터 매우 우수하였다.

(2) 모시의 특징

모시(ramie)란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땅속줄기나 종자로 번식한다. 줄기는 80~160cm, 잎은 10~15cm로 제법 크며 줄기는 주로 모시옷(섬유)으로 잎은 차나 떡 등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된다.

42) 모든 후보자원에 대해 현지 조사, 인터뷰 조사 등 심층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헌자료 위주로 분석한 결과이기에 분석 결과의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밝힌다. 향후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제도가 도입되어 지역농업유산 후보자원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충분한 조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서천군(2006), '모시재배방법' 모시종근재배 교육 자료, 문윤호(2005), '모시 번식과 재배' 자료를 인용,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모시 섬유는 표면이 매끄러워서 엉키는 힘이 적기 때문에 짧은 것은 단독방적이 곤란하다. 실은 탄력이 적고 마찰력도 약하나 장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모시의 재배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시는 영년생이며 따뜻한 고장에서는 심은 다음 해부터 연 3회까지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다. 따라서 비교적 수확성이 안전한 작물 이어서 기상재해로 인한 타격이 적다.

둘째, 모시의 재배에는 비교적 노력이 많이 든다. 그 대부분은 작업이 박피, 건조 등이어서 부녀자와 고령자의 노동력 흡수도 가능하고, 연 2~3회 수확하기 때문에 노력의 분배도 비교적 용이하다.

셋째, 종자를 생산해내기 위하여 재배하는 작물과는 달라서 비료가 과다하여도 실패하는 일이 없고, 재배하기가 쉬우며, 단위면적당 수량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다.

(3) 한산 모시 재배와 관련 산업 현황

서천군의 모시재배 면적은 1965년 약 228ha 이었으나, 점점 급감하여 1980년에는 5.6ha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그 후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는 115농가에서 약 1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필모시 생산량은 연간 641필⁴⁴⁾, 모시 잎은 연간 345톤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전통모시(모시옷) 업체 수는 10개소이며 종사자는 114명, 연간 매출액은 843백만 원에 이른다. 식품모시 업체는 34개소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3,600백만 원이다.

(4) 농업유산적 가치

한산모시는 1,500년 계승되어 온 모시농업과 전통 직조기술과 공동체 의식이 포함된 우수한 전통문화로서 농업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재배되어 오던 재래종이 지금도 재배되고 있다는 점도 농업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재래종은 섬유량은 적으나 섬유질이 우수하고 내병, 내풍, 내한성 등이 강한 우수한 품종이다.

44) 1필이 21.6m×31cm임

2. 공주 정안밤농업

(1) 정안밤 농업의 역사

한반도의 산과 들에는 밤이 자생하였으며 우리민족은 선사시대 때부터 밤을 먹었다. 그 먼 옛날부터 조선시대까지 밤은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구황식품에 가까웠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 양주, 용인, 가평, 수원 등이 밤 주산지였는데, 1960년대 이후 경남 하동과 진주, 전남 광양과 순천 등 일본의 자연환경과 비슷한 남부지역이 주산지였다. 이 같은 밤 주산지의 변화에 정안은 거의 북단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밤나무 재배는 1958년부터 발생한 밤나무 흑별 피해로 재래의 토종밤나무는 강원, 경기북부 지역 등 일부 지역에 노거수(老巨樹) 형태로 남아 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밤나무는 1960년대 중반 국내 또는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들이며, 우리나라의 밤나무 주산지는 공주, 부여, 청양, 충주, 하동, 진주 등지 이다. 공주 정안에 밤나무가 본격적으로 심어진 것은 1960년대 말이며, 품종(단자와, 丹澤)은 일본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후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선발된 품종이 식재되었으며 대표적인 품종이 ‘옥광’과 ‘대보’이다.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내 밤 생산량이 급증을 하면서 일본 수출이 활발하여 밤은 큰 돈벌이가 되었다.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수출하였다. 1990년대 들면서 일본 수출이 주춤해졌다. 대신에 국내 수요가 크게 늘었다.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도 필요했고 지명과 농산물명이 결합된 브랜드도 필요했다. 정안에서 재배하는 여러 품종 중에 우리 입맛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여 집중 재배하고 품질 관리를 해나갔다. 브랜드를 ‘공주 밤’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공주 전체 밤 생산량 중 40%에 달하므로 ‘정안 밤’을 고집하기로 했다. 현재 정안 밤은 국내 밤 브랜드 중에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네이버캐스트 인용⁴⁵⁾, 황교익)

(2) 정안밤의 특징(고유성)

충남 공주시 정안면은 차령산맥 안에 있으며 제법 400~600미터에 이르는 봉우리들이 정안면을 둘러싸고 있어 분지에 가깝다. 서북부는 산이 높고 남쪽으로는 산지가 낮는데, 이 비탈의 산자락에 밤나무가 자람. 땅은 모래가 많아 물 빠짐이 좋다. 사질토라도 메말라 있지는 않으며 밤나무 낙엽

45) 네이버캐스트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43&contents_id=1309

이 수북이 쌓여 시커멓게 거름기가 풍족한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높은 고지에 위치하여 알차고 견실한 밤을 생산하기에 좋은 고지성기후 조건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더해져 자연적으로 낙과한 알밤만을 수확·판매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정안 밤은 다른 지역 밤보다 저장성이 우수하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당도가 높으며 포도당·단백질·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무기질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는 위(胃)를 실(實)하게 해주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3) 농업유산적 가치

공주 정안지역의 밤은 우리나라 밤 농업의 역사적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역사는 약 50년 정도 짧지만, 우리나라 밤 주산지로서 그 명성은 높다. 정안지역은 지형적, 기후적, 토양적으로 밤 농업에 매우 적합한 곳으로 밤의 품질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 특히 최근 들어 무농약 유기농 밤 생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낙과한 알밤만을 수확하는 것은 농업유산으로 가치를 더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

3. 당진 합덕제

(1) 역사성

A. D 33년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시작됨과 함께 농업용 저수지가 축조되어 졌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김제 벽골제, 상주 공검지, 제천 의림지, 밀양 수산제가 이것들은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진 합덕제는 백제 27대 위덕왕(554~598년) 또는 30대 무왕(600~614년)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합덕제 관련 방축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합덕제의 길이가 3,060척(약 940m)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성종실록'에는 2,700척(831m)으로 나타냈다.

(2) 농업유산적 가치

합덕제는 직선 모양의 김제 벽골제와 다르게 곡선의 둑 형태가 비교적 원형대로 남아 있고 당시 물리 범위와 활용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역사성이 크다. 당진시는 2000년대 들어와서

발굴조사를 한 뒤 2007년부터는 독 복원과 조경 등 합덕계 복원정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당진 시는 합덕계를 세계관계시설물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여 2017년 10월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재 확정되었다.

4. 공주 선학리 지계놀이⁴⁶⁾

(1) 지계놀이의 역사

지계놀이는 한민족의 농경사회에서 농민들과 가장 밀접했던 농기구인 지계를 이용하여 즐기는 놀이 문화의 결집체이다.

공주시 선학리는 전형적인 충청도 내륙지역의 산촌형 마을로서 이 지계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 공동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이 놀이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피해 이주한 입향조들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학리에는 지계놀이와 함께 개인놀이인 윷치기와 장치기와 같은 민속놀이, 그리고 산제와 장승제와 같은 마을의례도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2) 지계놀이의 내용

지계놀이는 우선 흰색의 한복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흰 띠를 두르고 지계와 농기구 등을 든 행렬이 길게 늘어져서 진행된다. 놀이 순서는 지계작대기 걸음마와 작대기 고누기, 지계 힘 자랑, 지계지네발건기, 지계작대기장단, 지계풍장(風樂이라고도 함), 지계상여, 지계호미뜯기, 지계꽃나비로 구성된다.

지계작대기 걸음마와 작대기 고누기는 지계와 작대기에 각각 올라 걸음마를 하고 작대기 위해 오래 버티기를 하는 놀이이다. 지계 힘자랑은 성인식의 하나로 젊은이들이 지계에 사람을 태워서 힘자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계지네발건기는 지계를 연결하여 그 위를 걷는 것을 말하며, 지계작대기장단은 지계꾼들이 나무하러 다니며 지계 발목을 장구 치듯이 치는 장단을 말한다. 지계풍장은 지계 발목 장단으로 가락을 연주하는 것이며, 지계상여는 지계 2개로 상여(喪輿)⁴⁷⁾를 1개로는 요여(腰輿)⁴⁸⁾를 꾸민 뒤에 작대기로 옷옷을 벗어 걸어 만장(輓章)⁴⁹⁾을 만들어 상여 메는 예행연습을 익

4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인용,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47) 상례(喪禮) 때 시신을 운반하는 기구이다.

48) 전통장례에서 장사를 지낸 뒤에 혼백과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는 작은 가마이다.

히는 협동체 놀이이다. 지게호미끌기는 두레를 마치고 호미를 지게고리에 걸고 끌고 가는 놀이이며, 지게꽃나비는 두레가 끝나는 날 두레꾼들이 마을 앞 공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색동저고리를 입은 어린이를 지게 위에 태우고 가는 놀이이다. 이러한 지게놀이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놀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성격을 가진다.

(3) 농업유산적 특징

지게놀이는 농업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농업유산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지게놀이는 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농기구일 뿐 아니라, 놀이구성이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산촌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농업의 이동수단으로서 지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점에 착안해, 지게를 지고 이동해야 하는 힘든 농사일을 좀 더 즐겁게 해보자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놀이가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게를 졌을 때의 다양한 행위와 지게로 지는 여러 물품 등과 관련된 동작들이 주를 이루며, 두레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는 점에서 농업 활동을 위한 공동체적 놀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지게놀이는 2004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승, 보존되고 있다.

5. 금산 송계 및 송계지게놀이

(1) 개요

금산군에는 150여 개의 크고 작은 송계 조직이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19세기 이래 전국에서 송계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송계란 '산림의 보호와 이용을 목적으로 조직된 계' 또는 소나무 숲이라는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결성된 조직체로 단지 소나무의 보호와 이용에 국한되지 않고 화목(火木)과 퇴비의 수급원이 되었다. 또한 임목의 생산과 유실수의 방매, 산전(火田)의 개간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송계가 조직된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일정한 금제(禁制)하에 산림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동중재원(洞中財源)을 확보하고 각종 긴급사에 대응하는 역할도 하였다.

49) 죽은 사람을 에도하여 지은 글이며, 형식은 대개 5언 절구와 5언 율시 또는 7언 절구와 7언 율시이다.

송계는 마을에 따라 금송계, 순산계, 금양계, 삼림계, 식림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송계가 성립되던 조선 후기부터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송계라고 통칭해 왔다.

(2) 금산지역 송계 현황

금산군에는 150여 개의 크고 작은 송계 조직이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19세기 이래 전국에서 송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금산지역 송계 분포현황을 보면 금산군 10개 읍면 가운데 금산읍, 추부면, 복수면을 제외한 7개면에서 송계가 확인되었다⁵⁰). 그 가운데 금성면이 30개로 가장 많았으며 남이면 24명, 남일면 20개로 순으로 많다.

(3) 송계지계놀이

금산지역에서는 18세기부터 겨울철 땀감과 벼, 인삼의 비료를 수급하기 위해 마을별로 송계(松契)를 조직하였는데 19세기 말에는 이러한 송계가 156개나 존재했다고 한다. 송계조직은 각 농가에서 나온 ‘초군’, 각 마을을 대표하는 ‘총각대방’, 그리고 각 송계를 대표하는 ‘대방’ 또는 ‘원대방’으로 구성되었다.

송계지계놀이는 벼와 인삼을 식재하기 전 경작지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퇴비를 준비할 때 하던 놀이이다. 이 놀이는 각 마을별로 풀을 베어 퇴비를 만들 때 행해지는 금산지역의 중요한 농촌 문화이다.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화학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산과 들에서 벤 풀과 잡목을 이용해 천연비료(퇴비)를 만들었다. 이러한 천연비료를 인삼을 심기 전 밭에 뿌리고 뒤집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 인삼밭을 비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 놀이는 1980년대 이후 농촌인구의 과소화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지만 금산문화원에서 2000년에 금산의 새로운 민속놀이로 복원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송계지계놀이보존회를 조직하여 매년 비단고을산꽃축제와 금산인삼축제를 통하여 전승되고 있다.

50) 금산군지편찬위원회(2011), 금산군지 참고



〈그림 5-1〉 금산군 송계지계놀이 모습

6. 서천군 길쌈노래(저산팔읍길쌈놀이)

(1) 길쌈노래의 역사성

충남 서천, 부여, 보령 등지는 예부터 모시 주산지로, 여성들이 주로 실내에서 모시일을 하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율동이나 관련된 놀이 없이 노래를 불러왔다. 이것을 ‘길쌈노래’라고 부른다.

서천 길쌈노래(저산팔읍길쌈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연대는 확실치 않다. 저산팔읍(저산팔읍)이란 모시풀이 자라나는 8개의 마을이란 뜻이다. 서천군 한산을 중심으로 한 한산, 서천, 비인, 홍산, 임천, 남포, 정산, 보령 등 8개 마을은 칠갑산을 둘러싼 차령산맥 안쪽 지역으로 예로부터 모시길쌈의 고장으로 세모시 생산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고려 말 이색(이색), 1328~1396)의 송청저(送靑苧)나 잠부사(蠶婦司) 등을 통한 길쌈예찬, 하륜(하륜, 1347~1416)선생이 이 고장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 한 조선시대의 군현별 길쌈 경연대회,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이 고장에 저마조합을 설치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기술을 보호하였던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길쌈놀이는 이 고장 토속 민속으로서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2) 내용

모시길쌈을 장려하기 위해 농사일이 한가한 틈을 타서 마을별로 많은 부녀자들이 나와 모시 길쌈 경연을 겨루었다. 이때 놀이는 모시베끼기, 모시삼기, 모시꾸리감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모시짜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노래와 행위로 표현한다. 또한 저산팔읍을 예찬하는 노래에 맞추어 흥겹게 춤추면서 농사의 고달픔을 잊고 이웃과 화합을 꾀하고 협동을 다지었다. 노래는 4.4조 또는 3.4조의 민요풍으로 여인네의 애환과 체념, 그리움 등이 담겨 있다.

(3) 농업유산적 특징

서천군 길쌈놀이농촌생활형 농업유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길쌈놀이를 통해 지역주민(농민들)들 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단조로운 농작업을 흥겹게 해 주면서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서천 길쌈놀이는 198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986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7.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1)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의 역사성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모감주나무는 중국이 주산지로 알려져 있어 중국 내륙에서 자라던 나무의 종자가 해류에 밀려와 군락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과 서해안 물론 동해의 영일만 일대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본래 자생하였다는 것으로 나뉜다.

(2) 내용

안면도의 모감주나무 군락은 안면읍에서 3km 떨어진 방포해수욕장의 해변에 있다. 숲의 길이는 120m, 너비 약 15m로 바닥은 자갈로 덮여 있으며, 높이 2m정도의 나무가 400~500그루 정도 자라고 있어 해풍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한다.

이곳에는 모감주나무외에도 소사나무, 졸참나무, 신나무, 소태나무, 음나무, 갈참나무, 고로쇠, 구지뽕, 짚레, 쥐똥나무, 개벚나무, 왕머루, 세머루, 청가시덩굴, 노박덩굴 등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어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되어 있다.

(3) 농업유산적 특징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이 주변 농업 또는 농촌생활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 조사, 분석을 하지 않아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해풍을 막아주는 방풍림으로서 주변 농작물에 분명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모감주나무외에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농업유산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모감주나무 군락지는 천연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다.

8. 기타

‘금산 물떼기 농요’는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구전농요(農謠)로 금산군 부리면 물떼기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16호 지정되어 있다..



논농사의 시작부터 수확까지의 과정을 노래와 동작으로 표현한 <그림 5-2> 금산물떼기농요 ‘물떼기농요’는 땅의 신(神)에게 제례를 올리는 토신고사(土神古祠), 모심는 소리, 논두렁밟기, 논두렁고치기, 방아소리 등으로 구성된다. 평야와 산간지대의 소리(노래)가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물떼기농요’는 1991년 한국민속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금산농바우끄시기’는 금산군 어재리에서 전승되는 공동놀이이다. 이 공동놀이는 가뭄이 심해 농사를 질 수 없을 때 신(神)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의식을 지니고 있다. ‘금산농바우끄시기’는 여러 놀이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물병매기’이다. ‘물병매기’는 가뭄 시 부녀자들이 물병을 이고 강가에 가서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와 대문에 물병을 거꾸로 매달아 놓은 후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예방하는 의식이 있다.



<그림 5-3> 금산농바우끄시기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 및 한계

본 연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를 하게 된 문제의식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구 목적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제2장 관련 개념 검토 부분에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기존의 농업유산과 UNESCO 유산에 대해 정리,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기존의 유산들의 개념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역농업유산에 대한 개념, 기본 조건, 구성요소를 정립하였다.

제3장 관련 정책 사례 검토 부분에서는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제도의 지정기준, 절차, 관리 방안 등 정책 추진 기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문화재보호법 등 기존의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추진(안) 부분에서는 제2장, 제3장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지역농업유산의 필요성, 지정대상, 지정기준 등을 만들었으며,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보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제5장 충청남도 농업유산 후보자원 발굴 부분에서는 제4장에서 다룬 지역농업유산 지정대상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농업유산 후보자원들을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다.

제6장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어업유산 부문에 대해 다루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어업유산의 개념, 대상, 기준들을 정리하여 농업유산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업유산 후보 자원 발굴에 있어 후보 자원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현재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최근 농업유산에 관한 정책 추진력과 지역주민의 관심도 측면으로 볼 때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몇 걸음 더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농업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도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지역농업유산 제도의 도입이라 생각한다.

농업유산에 대해 한 발 앞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지역단위의 농업유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유산제도는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농업유산과는 차이가 크다.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 도 단위의 농업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유산 자원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완벽한 제도적 틀은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지역농업유산 제도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 도입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역농업유산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가칭)'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어느 정책(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 줄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관련 조례안 제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도민, 도의원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지역농업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농업환경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업유산은 농촌지역의 생물다양성, 경관 등 환경적 요소를 매우 중요시 한다. 이런 점에서 농업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지역농업유산을 선정된 지역(마을)을 농업환경 프로그램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농촌다움 복원사업'과의 연계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유산에 대한 도민의 명확한 이해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농업유산은 다른 문화유산, 문화재와 달리 유산을 보전, 관리, 활용하는 주체는 행정이 아닌 지역주민이자 도민이기 때문이다. 지역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농업유산에 대한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농혁신대학, 시군 3농포럼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시군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은 충청남도에서 총괄적인 관리, 운영은 하지만 실제적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전, 활용하는 것은 시/군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지역농업유산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본 정책에 참여 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먼저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은 지역농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진혁(2017),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모형 적용을 위한 농업유산지역의 공간자료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창규(0000),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방문화사
- 농림축산식품부(2015),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백서」
- 농림축산식품부(2007),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표준 교재」
- 문윤호(2005), 「모시번식과 재배」 서천군
- 백승석(2015), 「한국 농어업유산의 가치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민근(2005),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계」 국토논단
- 유학열(2013),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개념과 사례」 한국농어촌유산학회 창립심포지엄 자료
- 유학열(2017), 「지역농업유산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2017년 한국농어촌유산학회 학술대회
- 윤원근 외(2016), 「농어촌유산과 에코뮤지엄」 대원사
- 윤원근 외(2012), 「농어촌자원의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리시스템 연구」
- 윤원근 외(2014), 「농어촌유산의 이해」 청목출판사
- 이민수 외(2014), 「전라북도 농업유산 발굴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이정환 외(2016), 「국가 및 세계 중요농업유산 선정지역 모니터링 및 관리기법 개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주남희(2016),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수명(2016), 미래형 농어촌지역발전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농어촌지역학회 학술단체연합회

부 록

1.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신청서 양식(안)
2. 제주도 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3.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정(안)
4.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신청서 양식(안)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6개월
신청대상	명칭	대상지역(면적)	
	특징		
신청자	시·군·읍/면 명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지정, 보전, 관리 조례(가칭)」 제00 조의 0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농·업유산자원 설명서
 2. 농·업유산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3. 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충청남도

농업유산 자원 설명서

<요 약>

1. 신청자(기관, 단체, 조직)
2. 대상지 위치(면적)

I. 역사성

II. 특징

1. 전통적 농업시스템(기술, 지식, 지혜 등) 기술
2. 농업경관 또는 농촌경관 기술
3. 농업 생물다양성 기술
4. 전통적 농촌, 농업문화 기술

III. 관련 주체의 참여

IV.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제주도 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유산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더불어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 무형의 농업, 어업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 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 관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 중요농업유산(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 지구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지구 및 농어업유산마을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어업유산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전수조사 및 보전, 활용에 관한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의 지정신청)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특성이 있는 자원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의 각종 학술연구에 대한 참여 및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에 대한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농어업유산의 날 및 세계유산 주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7. 국가농어업유산 이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8. 농어업유산의 심의
9.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6.>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업유산 관리업무 담당하는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의 된다. <개정 2015.10.6.>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세계농업식량기구(FAO), 연구기관(지질, 동물·식물, 고고, 환경, 농업, 해양, 수산, 역사 등), 교육, 언론, 관광, 상공, IT, 건축, 전시, 디자인, 농어업유산지구 주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제8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⑤ 간사는 제주자치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기관의 설치 및 위탁)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 및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농어업유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자료관리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업유산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 복원·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사업
2. 농어업유산 체험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3. 농어업유산 축제사업
4. 농어업유산 홍보 등 가치제고 사업
5. 농어업유산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 사업
6. 농어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7. 농어업유산 우수·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사업
8. 농어업유산 직불제 사업
9. 농어업유산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사업
10. 세계·국가농어업유산 등재 사업
11. 농어업유산관리 사업
12. 농어업유산 발굴 및 농어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15조(주민참여 등)

-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17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전라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전라남도에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어촌의 전통문화와 다원적 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어업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핵심적 가치와 연관된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농어촌의 다원적 자원”이란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식량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제공, 전통문화의 보전, 환경·생태계유지, 국민정서의 순화, 보건휴양과 학습·체험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발휘하는 자원을 말한다.
4.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이하 ‘도유산’이라 한다).
5. “생물다양성”이란 동식물·미생물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생태계 등 생물종·생물유전자·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한다.
6.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이하 ‘국가유산’이라 한다).
7.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재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시스템(GIAHS)을 말한다(이하 ‘세계유산’이라 한다).

제2장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의 지정

제3조(지정대상)

도 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경작지, 산림, 저수지, 갯벌, 염전 등 농어업 기반시설, 농어업생산·가공 설비 등 유형적인 것과 기술·문화·사회조직 등 무형적인 것, 마을·산·강·바다 등 경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복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도 유산이 속하는 핵심지역과 주변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준)

① 도 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00년 이상의 전통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시스템으로서 식량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2. 생물다양성의 증진
3. 특별하거나 차별화된 지식이나 기술 또는 기법의 보유
4. 농업시스템과 연관된 전통적인 문화의 보유
5. 아름답거나 특별한 경관의 형성
6. 지방자치단체·주민의 도 유산 유지·관리·활용계획 및 협력체계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5조(지정 신청인)

① 도 유산은 시장·군수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을 보유한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 또는 그 대표자
2. 농어업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
3. 농어업유산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다만 외부 전문가는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정 신청서 제출)

① 농어업유산을 도 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와 지역 주민에게 도 유산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 유산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업유산 설명서
2. 권리자 등의 의견 수렴 결과서
3. 주민협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
4. 시장·군수가 수립한 농어업유산 보전·활용 계획서 사본
5. 농어업유산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
6.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유형·무형 자원의 목록

제7조(심의 요청)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변경·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도 유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결정)

① 도지사는 도 유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선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도 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번호 등)

① 도 유산의 지정번호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유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높은 점수 순서대로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 제0호'로 표시한다. 다만, 도 유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동일 점수의 농어업유산이 발생할 경우 농어업유산 지정 기준의 평가항목 순(유산의 가치성, 파트너십, 효과성)의 점수가 높은 유산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② 도 유산의 명칭은 별지 제1호의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역명칭에 해당 도 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도 유산 심의위원회가 명명한다.

③ 지역의 명칭은 도 유산이 위치하는 시·군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되, 신청인이 강·해역이나 마을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서의 발급)

도지사는 도 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 유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11조(지정 변경 등)

① 도지사는 도 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 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도 유산 지정 신청인이 도 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제4조에서 정한 도 유산의 지정기준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② 도 유산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유산의 위치와 면적
2. 도 유산 지정시의 기준과 현저히 달라진 사항으로서 신청인이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

③ 도 유산 지정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의 도 유산 지정(변경·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 유산 지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 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농어업유산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지정할 수 없다.

제3장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 ① 도 유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 심의위원회(이하 '도 유산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도 유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 ④ 도 유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 농림식품국장
 2. 도의회 농수산위우연회 삼임의원
 3. 도 공공디자인과장
- ⑤ 도 유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농어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할 유산의 성격상 위촉한 심의위원 외의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⑥ 위촉직 위위노이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도 유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식품국 소속 공무원 중 도 유산 업무담당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도 유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도 유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유산의 도 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
2. 도 유산의 지정 변경이나 취소에 관한 사항
3. 도 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신청과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4. 도 유산의 지정기준·절차·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 유산 발굴 등에 필요한 자문역할과 도 유산의 보전·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15조(심의절차)

-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도 유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① 도 유산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유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자인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 유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 유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회)

① 위원장은 도 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인이 도 유산 지정을 신청한 유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 유산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도 유산 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외부인 중에서 농어업유산에 전문성을 갖춘 2~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유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조사위원회는 농어업유산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농어업유산을 관할하는 시·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농어업유산에 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도 유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 유산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도 유산심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 유산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출석시킨 이해관계자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업무협조)

위원장은 도 유산 심의회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시·군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

제21조(기본방침)

- ① 도지사는 도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 보전·관리·활용 계획을 반영하여 도 유산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 유산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과 농어촌다원적자원의 가치 증진 및 농업유산과 관련된 조사·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도 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도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도 유산의 보전·활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둔 보전·관리방안
2. 농어촌의 활성화와 다원적자원의 가치 증진 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용방안
3.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원투자방안
4. 도 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협의회와의 협력방안

제24조(관리주체)

- ① 도 유산으로 지정된 농어업유산은 주민협의회가 관리한다. 다만, 유산의 특성상 자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민협의회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나 전문기관에 관리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 ② 주민협의회나 전문기관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도 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관리자 사이에 별지 제6호에 준용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복원 및 수리)

① 시장·군수가 도 유산을 복원·수리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권리자와 주민협의회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 유산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유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을 것
2. 유산은 일률적인 복원·수리를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새로운 재료·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
4. 유산의 복원과 수리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할 것

제26조(활용)

①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농어촌의 활성화 또는 도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도 유산을 활용하는 사업(이하 '유산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유산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 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멸시시키지 말 것
3. 도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것
4. 권리자와 주민협회의 동의가 있을 것

제27조(모니터링)

① 도지사는 현상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도 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실태조사)

① 도 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도 유산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도 유산의 구조적 안정성 및 훼손여부
2. 도 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환경 등 주변의 변화상태
3.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의 상태
4. 기타 도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29조(조사결과 조치)

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권리자와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도 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도 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제30조(관리 기록)

시장·군수는 도 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황, 조사결과, 복원 및 수리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7호의 도유산 실태조사서(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도 유산은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 등에 따른다.

제32조(국가유산 등재 후 관리)

도 유산이 국가유산으로 등재된 경우 해당 도 유산은 국가유산 지정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제정 이전에 전라남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구례군 산수유 시목지 및 군락지, 보성군 계단식 차밭, 담양군 대나무 숲, 신안군 갯벌·염전, 화순군 붓도랑과 다랑이논, 무안군 회산백련지, 영관군 염전 등 7개소의 도 유산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구례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군목인 산수유나무를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산수유를 특산물로 육성·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수유나무”란 「구례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징물로 지정되어 있는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2. “고령목 산수유나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근원경 30cm 이상으로 조사된 산수유나무를 말한다.
3. “산수유나무 매입사업”이란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시 고령목 산수유 나무 재배농가 중 고령·질병 등의 사유로 산수유나무 관리가 불가능한 농가의 산수유나무를 군에서 매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이란 군의 군목인 산수유나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한 주민활동”이란 개인 또는 법인 등에서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금지를 위하여 펼치는 산수유나무 보호운동 및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 설치)

① 산수유의 보호·육성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산동면장, 구례군산수유생산자영농조합법인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구례군산수유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서 추천한 자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구례군의 산수유 보호·육성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산수유 확대재배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심의

3.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등) 도입 등 지원
5. 산수유 친환경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등 지원
6. 산수유 가격 변동에 대한 대책 협의
7.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산수유 수확 어려움 해소방안 대책 협의
8. 구례군 산수유 보호·육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수유나무 보전을 위한 지원금의 지역, 범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9.>
10. 그 밖에 산수유 보호·육성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9.>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수당)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회의를 개최 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부서의 업무 담당이 된다.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태조사)

- ① 군수는 산수유 보호·육성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익년 2월말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내용에는 산수유나무 재배농가, 필지, 수령, 면적, 주수, 생산량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산수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목 산수유나무(근원경 30cm 이상) 매입사업
2. 산수유 재배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산수유 확대 재배 지원사업
4. 산수유 우수품종 육종 및 선발
5.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시스템(이력제등) 도입
6. 산수유식품 개발 및 홍보·연구 등에 대한 지원
7. 산수유나무 보호 및 반출 금지를 위한 주민활동 등 지원
8. 산수유나무 보전을 위한 지원금 등 지원 <신설 2015.11.9.>
9. 그 밖에 산수유 보호·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9.>

②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령목 산수유나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 매입가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할 시는 산수유 재배면적 1,000㎡이상 농가 중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수유 보호활동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고령목 산수유나무의 반출 신고)

① 고령목 산수유나무(근원경 30cm 이상)를 반출(군 매입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군 매입 신청)신고서를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령목 산수유나무 반출(군 매입신청) 신고 시에는 30일 이내에 군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산수유 보호·육성지원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산수유나무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 군수는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수유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산수유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5.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 2015.11.9.>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산수유나무 실태조사 방법, 고령목 산수유나무 매입절차, 산수유나무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급방법, 고령목 산수유나무 보호관리 이력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유학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참여 · 김정하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17-16 · 충청남도 지역농업유산 정책 도입에 관한 연구

글쓴이 · 유학열, 김정하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7년 12월 31일 /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1(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412-1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